

## Korean Tax Update

October 2017, Issue 40

### [조세뉴스]

#### 국세청, 베트남 국세청 고위직 대표단, 한승희 국세청장 접견 [보도자료]

한승희 국세청장은 '17. 10. 25.(수)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 치 흥(Vu Chi Hung) 베트남 국세청 국제조세국장을 대표로 하는 베트남 국세청의 고위직 대표단(본청 국제조세국장, 꽝빈·까인호아·람동 지방청장)을 접견하였음.

- 한승희 국세청장은 베트남 국세청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고, 지방국세청 간 상호협력 강화가 양국 국세행정의 발전과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아울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 진출 기업 수 3위(4,738 개, <한국수출입은행, '16년>)재외동포 수 8위(108,850 명, <외교부, '15년>)
- 베트남 대표단은 한국 국세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선진세정이 베트남 국세청의 세정개혁과 현대화에 큰 디딤돌이 되고 있음을 전달하였음.
- 양국 지방국세청은 서로의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05년 지방청장 회의를 최초로 개최한 이후 작년까지 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음.
- 베트남 대표단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도 방문하여 조세소송 전담조직과 현금 영수증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기획재정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마련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전문가 TF 운영·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9.27 일 개최, 위원장: 고형권 1차관)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함

- 이번에 마련되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 조 제 3 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2018. 1. 1 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10.24 일~11.13 일),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11 월 중 고시될 예정임.
-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 (1) 개정이유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9개 공공기관과 건국학교 등 14개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4개 단체(대한체육회는 기부금 범위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추가)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안 별표 6의 2)

「법인세법 시행령」제 36조 제 1항 아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 18조 제 1항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정함.

#### 나. 지정기부금의 범위(안 별표 6의 3)

「법인세법 시행령」제 36조 제 1항 다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 18조 제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생활진흥체육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범위에 추가함.

#### 다.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안 별표 6의 5)

「법인세법 시행령」제 36조 제 1항 다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 18조의 3 제 4항에 따라 건국학교 등 14개 학교를 법정기부금 범위에 추가함.

#### 라. 공공기관 등(안 별표 6의 7)

「법인세법 시행령」제 36조의 2 제 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 18조의 3 제 4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9개 단체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에 통합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함.

## [예규·판례]

---

**[판례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 41 조의 5 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 두 3096 판결

- 구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제 2 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음.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 조 제 10 항은 수증자가 이 사건 조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제 41 조의 5)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 조의 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 1 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 2 조 제 2 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음.

**[판례 2] 분양계약 해제 시 당초 산입하였던 익금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 사업연도 과세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 두 60201 판결

-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2009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분양하여 이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다가 2012. 1. 1.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써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에 따라 당초에 산입하였던 익금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사안에서, 비록 계약이 해제된 사업연도의 손실로 반영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법인세법 시행령 제 69 조 제 3 항)이 2012. 1. 1. 이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2009 사업연도 분의 과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할 수 없음.

**[심판례 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등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조심 2017 서 3397, 2017. 9. 28.

-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해외여행객들에게 항공, 숙박, 현지관광지 입장 등 쟁점여행상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기획 및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랜드사간에 체결한 업무대행계약에 랜드사의 손해배상책임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현지여행실행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여행상품 관련 용역 등은 상품기획, 여행계약, 각종 비용 지급 등 여행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외국항행사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는 무관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심판례 2]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함**

조심 2016 지 1162, 2017. 9. 26.

-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인 점, 쟁점부동산은 내부에 예배시설이 없는 일반주택과 유사하고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행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실내 예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례 3] 회생계획에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심 2017 종 3254, 2017. 9. 22.

- 「상법」상 상사채권의 원칙적인 소멸시효(5년)는 채무자의 '승인', 채권자의 '청구'·'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중단되는 것으로, 비록 쟁점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후 인가된 이 건 회생계획에 쟁점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포함된 이상,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는 채권자의 그 재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여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쟁점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심판례 4]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반드시 평가기준일로부터 연속된 3 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 2017 서 0708, 2017. 9. 21.

- ① 사업연도 변경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반드시 평가기준일로부터 연속된 3 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상증법 시행령 제 54 조 제 4 항 제 2 호 후단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분할 신설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법인일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례 5] 항공권 결제 후 미사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심 2017 서 2803, 2017. 9. 20.

- 고객이 항공권 구입 예약 및 결제를 하게 되면 1년의 유효기간 안에는 해당 항공권으로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불 등을 받을 수 있어 고객이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고객이 1년의 유효기간 내에 탑승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약관에 의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귀속된 상황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탑승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면 항공권 결제 시 고객으로부터의 거래징수를 통하여 이미 국고에 납부되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국가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소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심판례 6] 「지방세특례한법」에 따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조심 2017 지 0277, 2017. 9. 19.

-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지방세기본법」제 53 조의 2 제 1 항 및 제 53 조 제 3 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례 7]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종전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 다시 처분청이 과세 처분하는 경우 본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대상이 아님**조심 2017 서 3028, 2017. 9. 14.

-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종전 처분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종전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그 이후 이 건에 대해 다시 처분청이 과세 처분하는 경우 본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규 1]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3, 2017. 10. 17

- 「학교급식법」 제 15 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2 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제 1 항제 19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예규 2]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1, 2017. 10. 12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 4 조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 채납 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6 조 제 3 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위 회신 내용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예규 3]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 10. 12

- ① 「부가가치세법」 제 60 조 제 1 항 제 2 호의 타인의 명의로 같은 법 제 8 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호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② 위 회신내용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예규 4]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4, 2017. 9. 25

-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예규 5]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 9. 25

- 내국인이 의약외품(醫藥外品)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25 조의 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예규 6]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세무과-22425, 2017. 9.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에서는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에서 사무소 등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

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서울소재 부동산에 지점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되지만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2011.1.7.참조).

**[예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8, 2017. 9. 7.

-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 조의 14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다만,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내의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e@kr.kpmg.com](mailto:kr-fmtaxcoe@kr.kpmg.com)

© 2017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